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2003. 5. 2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2000. 10. 1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새로이 시행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장학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명칭 변경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 부여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를 "학업에 충실하고"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을 "학업에 충실한"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을 "학업에 충실하고"로 동조제2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목중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을 "(장학금의 종류)"로 하고
②항과 ③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1호중 "동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를 "동장은 제3조에"로 한다

제7조중 제1호, 제4호는 삭제한다

제8조제목중 "(장학금 조성 및 관리)"를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u>학업성적이 우수하고</u>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복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학업에 충실하고</u> ----- ----- -----</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p> <p>1. <u>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u>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p> <p>2. <u>영세 농어민의 자녀중학업성적이 우수한</u>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p> <p>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u>학업성적이 우수한</u>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 ----- ----- ----- -----</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학업에 충실한</u> ----- 학생</p> <p>2. <삭 제></p> <p>3. ----- <u>학업에 충실한</u> ----- 학생</p>
<p>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p> <p>① (생략)</p> <p>② <u>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20 이내인자로 한다</u></p> <p>③ <u>일반장학금은 100분의20이내인자로 한다</u></p>	<p>제4조(장학금의 종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③ <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6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p> <p>1. 동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이 추천한다.</p> <p>2.(생략)</p> <p>제7조(지급정지) ①(생략)</p> <p>1. <u>학업성적이 불량할 때</u></p> <p>2. (생략)</p> <p>3. (생략)</p> <p>4. <u>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u></p> <p>5. (생략)</p> <p>6. (생략)</p> <p>제8조(장학금 조성 및 관리)</p>	<p>제6조(장학생의 선발)</p> <p>-----</p> <p>-----</p> <p>1.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급정지) ①(현행과 같음)</p> <p>1. <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삭 제></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p>